

부산고등법원 2022. 9. 29 선고 2022나5097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부산고등법원 2022. 9. 29 선고 2022나50970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22. 1. 12 선고 2020가합44394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

담당변호사 이중섭

피고, 항소인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철식

변론 종결2022. 8. 25.

판결 선고2022. 9. 29.

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22. 1. 12. 선고 2020가합44394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,

1) 부산 사하구 D 대 877m²에 관하여 2019. 5. 13.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을 419,210,000원의 한도 내에서,

2) 별지 기재 사업권에 관하여 2019. 5. 13.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을 247,026,272원의 한도 내에서, 각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원고에게 666,236,2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5면 10행 다음에 아래 "【】"기재를 추가한다.

【①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

1) 피고의 주장

피고는, 원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있기 전인 2018. 12.경 C을 상대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경과 및 이 사건 공사의 진행상황에 관하여 잘 파악하고 있었고 이 사건

양도양수계약이 2019. 5. 13.경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, 그로부터 1년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.

2) 판단

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'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'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,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.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,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.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,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(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).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① 원고가 C을 채무자로, G 주식회사(이하 'G'이라 한다)를 제3채무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카단103229호로 채권가압류(이하 '이 사건 채권가압류'라 한다)를 신청하여 2019. 1. 3.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사실, ② 그 이후 원고는 2019. 1. 30. 이 사건 가압류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여 2019. 2. 7. 가압류집행이 해제된 사실이 인정된다.

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,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될 무렵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C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.】

○ 10면 1행 다음에 아래 "【】"기재를 추가한다.

【⑦ 한편 피고는,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에는 이미 73억 8,400만 원 상당의 우선수익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될 만한 부분이 없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.

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C과 G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, 1순위 우선수익자 E조합의 수익권증서는 21억 4,500만 원, 2순위 우선수익자 F조합의 수익권증서는 52억 3,900만

원인 사실이 인정된다.

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제1심법원의 E조합 및 F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, ㉑ 이 사건 토지의 2018. 5. 11.경 가치는 2,072,910,000원이고, 2018. 5. 30.경 산출한 이 사건 집합건물이 준공된 이후의 예상감정가액이 83억 5,500만 원이었던 점, ㉒ 실제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준공 후 이 사건 집합건물 각 호실의 감정평가액은 합계 86억 5,600만 원에 달하였던 점, ㉓ 2019. 5. 13.경 C에 대한 E조합의 대출금이 16억 2,000만 원이고, F조합의 대출금이 합계 40억 3,000만 원으로, E조합과 F조합의 각 수익권증서상 금액에 미달하였던 점, ㉔ C과 G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제7조(우선수익자의 우선권) 제1항은 '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수탁자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근거로 한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간의 여신거래계약 또는 기타 거래계약으로 발생하여 증감 변동된 우선수익자의 채권원금 및 이자(연체이자 포함)에 한한다'고 명시하고 있는 점, ㉕ E조합의 수익권증서의 '피담보채무의 범위'란에는 '채무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주택건설자금대출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'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, ㉖ 이 사건 부동산에 E조합 및 F조합의 대출원리금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은 별도로 설정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E조합 및 F조합은 각 16억 2,000만 원 및 40억 3,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, 이를 제외하고도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.

피고의 주장 및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,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에 설정된 우선수익권을 제외하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될 만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도 없다.

따라서 피고의 이 주장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.

㉗ 또한 피고는,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, 설령 C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굳이 사해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을 양수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.

그러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첨부된 합의서(을 제1호증 중 8면 참조) 제3조에 의하면,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(채권액 1억 원)를 피고가 해결해야 하고, 제6조에 의하면,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.

이런 사정을 고려하면, 피고로서는 1억 원을 지급하여 가압류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향후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파기될 경우 유치권마저 행사하지 못하게 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필요나 그로 인한 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.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】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최은정

판사이재욱

판사박운삼

별지